#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9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김민철・민형배・오영환

임오경 · 김철민 · 한병도

어기구 · 김홍걸 · 서영교

이용호 · 민홍철 · 장철민

김경협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85%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 취득세 85% 감면과 재산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50% 감면은, 1) 합병을 통한 농업인 조합원 및예금자 보호, 2) 경영 합리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협조합 등 조합 간 합병 시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 주요내용

-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 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 ---- 2025년 12월 31일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 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

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 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 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4. (생략)
- ③ ~ ⑤ (생 략)

<u>202</u>
5년 12월 31일
<u>202</u>
5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